

대전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104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6. 21.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2. 15. 선고 2021가단19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포천시 L 전 1,418㎡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와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D 임야 1,336㎡ 중 7/11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포천시 E 잡종지 1,957㎡ 중 7/11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포천시 C 전 1,168㎡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포천시 L 전 1,418㎡ 이 사건 부동산 중 항소인의 공유자지분 전 1,418㎡에 대한 승소판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말소 대상 등기

등 청구취지를 명확히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3항에 기재한 그대로 옮겨 적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하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청구 부분의 각하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포천시 L 전 1,418㎡(이하 ‘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한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을 각하한다.

① 갑30호증에 의하면, L 토지는 대한민국이 7/11 지분, 원고가 4/1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G이 1999.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G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M가 2008.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L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가 된 적이 없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③ 원고가 G에 대하여 L 토지에 관하여 마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원고가 2023. 4. 11.자 준비서면에서 G을 피고로 추가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취지에 비추어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의 추가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는 것이므로, G을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G에 대한 말소 청구는 종전 피고에 대한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의 추가는 부적법하여 허가할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L 토지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김주연, 판사 조길상